

공사대금채권 등 양도각서

1. 본인은 사업(시행자 :)의 시공자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받음에 있어 부도·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하도급한 공사의 하도급자(수급사업자)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첨 공사도급계약서와 관련된 아래 본인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합니다.

- 아 래 -

- 가. 공사이행에 따른 공사대금에 관한 일체의 권리
나.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시행자에게 대여한 대여금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
다. 기타 공사이행과 관련하여 시행자로부터 공사이행의 대가로 수령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

2. 본인이 귀 공사에 양도한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의 권한을 귀 공사에 위임합니다.

첨부 1.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.
2. 인감증명서 1부.

년 월 일

양도인 주 소
 상 호
 대표자

(인)

확정일자

학 인

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